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김 숙*

목 차

Ⅰ. 서 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요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3.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
Ⅲ.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2. 세제개편 및 지원
3. 관련법령의 정비
4. 외환거래 자유화
5. 행정절차의 정비
Ⅳ.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2.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3.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4.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기능배분
5.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6.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오늘날 세계는 공존과 경쟁의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장벽의 강화, 첨단기술이전의 회피, 산업구조조정, 경제협력 등과 같은 지역화의 현상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조화의 국제환경을 협조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곧 해외투자라고 생각된다.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그 동안의 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주도하여왔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경제에서 최근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중의 하나는 전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 집중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서로 경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성장배경을 살펴볼 때 외국자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때 한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국내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어왔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기술의 도입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자유화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차관을 위주로 한 자본도입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본형성에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은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약하였다.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국내 총생산, 무역, 국내투자 등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율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허용, 외국인 토지 취득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기본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각급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부족과 자본 잠식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미흡, 국내 제도 및 법령 등도 여전히 취약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외국인직접투자 및 투자자금의 유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 경영기법 습득 및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수반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화자금을 이자 없이 도입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기반이 유지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자금을 급속히 회수해 갈 수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2] 그러나 점차 외국인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현 단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정책적 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개요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실물자산 소유권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획득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는 자산개념과 기업개념에 기초하여 정의 될 수 있다.

자산개념에 기초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일컫는다.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서의 투자의 정의는 이러한 자산개념에 기초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개념에 기초한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말한다.

이에는 신규기업의 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의 인수·합병(M&A), 모기업 및 관련기업으로부터의 5년 이상의 대부 등이 포함된다.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과 보편적 정의에 의하면, "계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투자로서 특

1)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영민(1996)과 이홍구(1994)등을 참조

2) IMF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중 하나는 이들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정부는 자국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시한 해외자본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왔으며, 이를 위해 국내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시장경제 지향적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을 경제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1998) 참조.

히 당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단순히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운영수익 청구권만을 소유하는 금융적 성격의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되며,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포트폴리오 투자와의 구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간주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진출동기에 따라서 시장접근형과 생산거점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접근형은 기업특유의 경쟁우위(Ownership Advantage)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3]이며, 생산거점형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투자유치국의 생산거점으로서의 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해 진출하는 형태[4]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2조상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자도입법상의 정의는 외국인 투자를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OECD 투자규범은 외국인직접투자를 거주자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거주자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은 거주자 기준을 원용하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개념이 거주자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장접근형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이전과 경쟁촉진 등의 효과, 그리고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추세를 고려할 때,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유치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생산거점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경우,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후발개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중대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한 현상은 장차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

(1) 투자유치국의 입장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의 투자유치는 거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자 없는 자금의 유입, 외채의 상환, 금리의 하락, 환율 안정, GDP의 상승, 고용창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 열거된 6가지 정책과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이자 없는 자금의 유입이다. 즉, 외국인투자는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한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가는 그 경제에 축적된 부[5]의 규모로 측정되는데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 부의 축적을 높임으로 건실한 경제운영의 원동력이 된다. 더구나 금융투자가 아닌 실물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경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외국인투자 규모와 실제 외환자본 유입액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성공리에 마치면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부가 과세권[6]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는 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둘째, 외자유치는 외채를 갚기 위한 외환유입의 한 방법이다. 외채의 발생원인은 일차적으로 외환의 공급부족에 있고, 외환의 공급부족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외화유입이 증대되어야 한다. 외화유입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을 포함한 수출 증대와 자본유입 증대라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관광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환유입의 증대와 이를 통한 신용도 회복과 부의 축적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단기적으로 외환 공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 나은 방법이다.

셋째, 외자유치는 금리의 하락을 초래한다. 금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조달[7]비용이며, 자본의 공급량에 반비례한다. 자본 공급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가고 자본공급량이 줄어들면 금리는 오르게 된다. 외자유치를 하면 자본공급량이 많아지므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 외자유치는 환율안정을 가져온다. 환율은 자국통화로 평가한 외화의 가치이다. 환율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외화의 가치와 함께 자국통화의 가치가 급변한다는 뜻

5)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1995, p. 19-28.
6) B. J. Arnold & M. J. Mcintyre, International Tax Primer, The Netherlands, 1995, pp. 19-28.
7) 최용선 · 오준석, 「재무관리」, 웅지아카데미, 1998, pp. 287-288.

이다.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한 경우 외화가치가 급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준비금으로 방어하게 된다.

외화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내외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안정되고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외환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환율안정에 기여한다.

특히 외국자본을 국내의 실물투자로 유치하면 외환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단기적 환차익을 얻으려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적 투기성 자금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외자유치는 GDP의 상승도 가져온다[8]. GDP는 국내총생산으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외자유치는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기업의 경영층이 직접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 규모의 GDP의 증대로 나타난다.

여섯째, 고용창출을 들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GDP를 증대한다는 의미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은 다시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의 증대는 생산을 부추겨 다시 고용을 창출시키는 승수효과를 가지게 된다.

(2) 투자자의 입장

해외 직접 투자가 새로운 생산시설을 위한 기존의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하기 위한 투자이든, 혹은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이든 간에 투자자에게는 자본의 투입을 의미하게 된다. 해외투자를 위한 선택이 일반적인 국내투자 결정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내 투자에 비해서 정치제도, 시장구조, 금융, 조세 등의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고, 환율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서 해외투자의 평가작업은 훨씬 복잡해지고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한다는데 있다[9].

해외투자 평가[10]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성을 지니는 요인은 환율이다.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이 현지 통화로 구성되어서 환율변동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환율의 변동이 당해 프로젝트의 경쟁적 위치에 영향을 주게

8) Agawal J. P.,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rment": A Survey, Weltwritschaftliches Archiev, 1980.
9) Bachtler J., "Policy Competi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Development Center Workshop, 1996.
10) 민상기 · 정창영, 「글로벌 재무전략」, 명경사, 1998, p. 495.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현금흐름 추정의 바탕을 이룬다.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불확실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있어서 환율문제는 매우 중요하겠으나 투자유치 당국의 입장에서는 종속변수인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투자유치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경영활동이다. 따라서 투자유치는 근본적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이지 유치 희망국의 함수가 아니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적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유치당국은 투자자가 국제투자의 두 가지 특성을 상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투자는 장기적이라는 것이다. 주로 투자유치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효과는 단기적인데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배분의 상대적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11]

따라서 투자자는 일정기간 경과된 후에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유치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채택하자고 요청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투자는 전략적이라는 것이다. 전략이란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12] 따라서 투자자는 근본적으로 국제투자를 의식하면서 투자국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점진적인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3.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버논[13]이 주장한 것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첫째, 부족한 자본과 외환을 충족시키는 한편 수출을 촉진시키고 수입을 대체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둘째, 선진국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수입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마케팅 전략과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셋째, 수입국의 고용을 증대시키며 기술인력을 양성시킨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

11) 조동성, 「국제경영」, 경문사, 1998, p. 362.
12) 오준석, 「전략경영시대의 경영학」, 웅지아카데미, 1998, p. 82.
13) Raymond Vernon, Sovereignty at Bay :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Basis Books, Inc., 1971.

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장에 미치는 효과이다. 외국인 투자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통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는 국산 투자재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확대시켜 성장에 기여하며, 이러한 수요증대를 통한 성장에의 긍정적 효과는 외국인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우리나라 시장 내부로부터 조달정도가 커질수록 커진다. 공급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설비투자, 즉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라는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지 기술능력의 향상이라는 질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진다.

둘째는 무역에 미치는 효과이다. 외국인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유발 효과와 수출대체 효과로 나누어진다.

수출유발효과는 외국인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 대체효과는 원래 외국인 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가능했을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이 외국인 기업이 생산기지를 우리나라로 옮김으로써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출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입에 미치는 효과도 수입유발효과와 수입대체효과로 나누어진다. 수입유발효과는 외국인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이 유발되는 효과이다. 수입대체효과는 내국인이 수요하는 제품의 일정 부분이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말한다.

수입유발효과는 주로 자본재와 원자재 등 중간재의 경우에, 수입대체효과는 주로 소비재 등 최종재의 경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산업구조조정의 촉진효과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개도국의 산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고도화하는 역할로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투자국은 투자대상국의 진보된 기술이나 경영노하우 등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투자대상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잠재적 시장확보를 목적으로 자국의 자본과 기술 또는 경영노하우 등이 체화된 생산설비를 투자대상국에 구축하여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하게 된다[14].

14) Ensign P. C., "A System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dvantage of being multinational, Advances in Competitiveness research, 1(1), 1993.

이것으로 투자대상국에 있어서는 자본축적과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상태에 있을 경우에 비해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보다 원활하게 고도화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가 투자대상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맞물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산업구조조정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들은 투자대상국대로 임금 등 생산비용면에서 비교우위가 하락하거나 자국내에서 시장이 축소된 제품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에서의 산업공동화 발생가능성을 완화해 주면서, 투자대상국에서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 사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원활하게 변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는 기술이전 효과이다[15]. 외국인 기업은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외국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순수 국내기업에 비하여 외국의 기술을 비교적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비교적 손쉽게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기업이 본국의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등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당해 자본재에는 대부분 선진기술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기술이전효과가 나타난다.

외국인 기업에 의하여 도입되는 기술은 국내기업의 기술진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 기술진보는 도입기업의 생산관리 개선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산관리 개선은 나아가 생산증가와 수입대체 등 국내 경제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기술 도입은 국내기업의 자체기술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활동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신제품 및 연구개발능력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주며, 나아가 기술도입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생산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입대상이 이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들이며, 도입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절감되고 자체개발시 예상되는 높은 투

15) Rugman A., "International as a General Theory of Foriegn Direct Investment : A Reappraisal of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e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16, 1980.

자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이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고용증가에 기여한다. 외국인 투자가 투자대상국의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의 총고정 자본형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 제조업 노동자의 약 70% 정도가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약 절반 정도가,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약 30% 정도가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 기업이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고용증가 효과는 외국인 투자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외환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외자유입은 투기성 자금 유입과는 달리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없이 외자를 안정적으로 장기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가 원활해질수록 대외적인 신인도도 점차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16]

(2) 부정적 영향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큰 투자유치국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는 주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동기와 투자유치국의 유치동기가 조화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수입국의 경우에 지나친 보호조치나 세제상의 특혜를 베풀어줌으로써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투자기업은 그 독점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존 기업들의 진입을 저지시켜 수입국내에 바람직한 자본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가격(transfer price)조작 등을 통한 자본의 유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은 세금이나 관세의 감소, 외환통제의 회피, 합작투자의 경우 배당의 증대 및 환위험의 감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한 자본의 유출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진위파악이 쉽지 않다. 그 결과 투자 유치국에서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자본 유출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6) 오정훈, "외국인투자 추가개방 어느 정도 가능한가", 「주간경제」, 1998.

셋째, 기술이전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격차로 인해서 기술이 거의 이전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기술이 이전되게 되어 수입국 경제의 특정부문에 자본집약적인 기술이 이전될 경우 성장의 고리를 형성할 연계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자본국에의 기술이전을 강화시켜 경제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다.

Ⅲ.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현황

그 동안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초점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보다는 차관도입 등 자본 거래 형태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의 개방으로 인한 경제 종속의 우려감, 투자유인체제의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였다.[17]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지적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경제회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현행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공공차관법으로, 외국환 관리법을 외국환 거래법으로 개편하고,[18] 현재의 소극적인 외국인 투자정책에서 투자촉진과 지원중심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내놓고 있다.(<표 1>참조).

---

17) 한국의 외자도입의 변천과정과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한국산업은행(1993), 김준동(1995) 등을 참조.

18)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은 제2절의 관련법령의 정비와 외환거래자유화 항목을 참조. 공공차관법은 현행 외자도입법상 외국환 관리법(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예정)으로 이관하기 어려운 외자도입법의 공공차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 공공차관 도입시 조세면제 및 무역업 신고면제 등의 특례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공공차관에 대한 규정은 1994년부터 IBRD로부터의 차관도입을 중단하면서 거의 사문화되었으나, 외환위기로대규모 공공차관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법규의 제정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표 1> 외국인 투자촉진 주요개선 내용

분 야	개 선 전	개 선 후
법의 명칭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 촉진법
투자정책	소극적 외국인 투자 정책 (규제, 관리 중심)	적극적 외국인 투자 정책 (촉진, 지원 중심)
투자자유화	M&A 등 외국인 투자의 제한	M&A의 전면 허용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신고절차	번거로운 신고체계	신고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인허가 처리지연 투자유치기관의 다기화(원스톱서비스부재)	인허가 일괄처리(자동승인제 활성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투자유인제도	조세감면 중심의 투자유인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 유인제도 ·지방정부의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재량 확대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보조금
사후지원	기존투자가에 대한 관심 부족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지원 ·고충처리제도의 도입

자료 : 재정경제부, 1999

1.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

(1)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1차)

98년 4월 1일부터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과 분양 공급업이 전면 개방되고, 곡물도정업, 증권거래업, 골프장 운영업도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되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의 운용을 신주인수로 제한하고 있는 투자회사 가운데 투자조합의 경우도 자산운용 범위가 확대되고, 유선방송업중 프로그램 공급업과 종합유선방송국은 종전의 15%에서 30%까지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다.

<표 2> 외국인 투자 개방 확대(1차)

업 종	개 정 전	개 정 후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건물분양공급업	외국인 투자지분 50%이하 허용	98년 4월 1일부터 전면개방
증권거래업	기존증권사 투자시 투자비율 50%까지만 허용 증권사 신설시 40-50% 범위 내에서 허용	〃 〃
투자회사중 투자 조합	외국인 투자 자금의 운용을 신주인수로 제한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 - 외국인 투자자금중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 코스닥벤처기업의 주식인수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상품교환업(선물거래업, 상품권발행업)	미개방	98년 4월 1일부터 부분개방 - 선물거래업의 경우 제1대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주식의 50%미만까지 투자허용
골프장 운영업	제주 중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98년 4월 1일부터 전면개방
유선방송업중 프로그램공급업, 종합유선방송국	외국인 투자 지분 15% 허용	98년 4월 1일부터 30%이하 허용
곡물도정업	국내 동종기존업체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98년 4월 1일부터 전면개방

자료 : 재정경제부, 1999

(2) 증권시장의 외국인 한도 폐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98년 5월 25일부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들도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100%(종전55%)까지 살 수 있으며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에도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신용거래와 상장채권의 장외거래를 할 수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해졌다. 포철, 한전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는 전체주식의 25%에서 30%로 늘어나고, 외국인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임시주총을 통해 정관이 변경되는 대로 1인당 1%에서 3%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등록절차도 간소화되어 외국인이 등록만 하면 주식, 채권 구분없이 즉시 투자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2차)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을 풀어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도하에 98년 5월초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또 다시 확대하였다.

전면개방된 업종은 부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던 팩토링, 선물거래업, 투자자문업, 종합금융업, 투자조합 등이며, 일절 투자가 금지되었던 저당신용기관과 금융자산증개업(ABS 발행 등), 주유소운영업, 토지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등도 제한없이 투자가 허용되었다.

부분개방업종은 도박장 운영업과 담배제품제조업이다. 도박장운영업중 카지노는 1999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100% 투자 가능하나[19], 슬롯머신, 복권 등은 계속 투자가 불허된다.

<표 3> 외국인 투자업종 개방확대(2차)

전 면 개 방 (11개 업종)		
업 종	개 방 전	개방내용
기타 여신금융업 (팩토링업, 저당 신용기관)	팩토링은 경영만 허용	전면개방
상품교환업 (선물거래업, 상품권교환업)	선물거래업에 한하여 기존사 투자시 50% 미만 허용	전면개방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	금융자산증개업은 미개방, 투자자문업은 기존사 투자(50% 미만 허용) 및 신설 허용	전면개방

19) 그러나 관광법에 따른 인가절차는 거쳐야 한다.

개 방 범 위 확 대 (7개 업종)		
업 종	개 방 전	개 방 내 용
발 전 업	50%미만 허용	정부투자기관(한전 및 수자원공사 등)은 외자비율 50%미만, 기타(민자발전사업)은 전면개방
신탁회사	증권신탁업은 50% 미만 허용, 금전신탁업은 은행이 겸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기타는 불허	증권투자신탁업 전면개방, 기타는 현행유지
신문발행업	25% 미만 허용	'99. 1. 1 외자비율 33%미만허용
정기간행물 발 행 업	25% 미만 허용	'99. 1. 1 외자비율 50%미만허용

개 방 범 위 확 대 (7개 업종)		
업 종	개 방 전	개 방 내 용
유선전신전화업	33%이하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전화역무 10% 기타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20%이하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3%	'99. 1. 1 외자비율 49% 미만 허용 '98하반기중 동일인 지분 제한 폐지 한국통신은 현행유지
무선전신전화업	33%이하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33% 외국인 대주주 금지 한국통신 :20%이하허용, 동일인지분 제한 3%	
기타 전기통신업	위성통신서비스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기준은 무선전신전화업과 동일	
투자회사(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조합, 지주회사)	단기금융, 종합금융:기존사에 투자허용 투자조합:외국인 출자금 80% 이상을 1년 이내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코스닥 등록 벤처 기업의 주식인수 방식으로 투자 지주회사:미개방	전면개방
주유소운영업, 기타 부동산임대업(토지임대업)	미개방	전면개방
토지개발공급업	미개방	전면개방
기타 해상운송업	예선업에 한하여 미개방	전면개방
수 도 사 업	미개방	전면개방(사실상 미개방)
신용 조사업	신용평가업:전면허용 신용정보업:기존사에 50% 미만 투자허용	'98. 7. 1 전면개방
원유정제처리업	50% 이하 허용	'98. 8. 1 전면개방

부 분 개 방 (2개 업종)		
업 종	개방전	개 정
도박장운영업	미개방	'99. 5. 1 카지노에 한하여 허용
담배제품제조업	미개방	'98. 7. 1 기존사에 투자시 외자비율 25%(1인당 한도 7%) 이하 허용

자료 : 개정경제부, 1999

2. 세제 개편 및 지원

(1) 자본·외환거래 관련 과세제도 개편

재정경제부는 국제화·개방화 흐름에 따라 98년 5월 15일 자본·외환관련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과세부분에서는 거주자(대부분 국민)의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과세기준은 실제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정상시가를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거주자중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거주자의 국외 투자자금 송금과 국외자산 변동내용에 대해서는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20]

20) 예컨대 건당 2만달러 이상인 국외예금·송금과 국외예금·부동산의 내용이 연간 10만달러 이상 변할 때는 국세청 통보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은행(금융 결제원)과 국세청을 연결하는 외화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표 4> 자본·외환거래 관련 과세제도 개편방안

구 분	내 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소득 과세개선	원천징수하되 양도차손을 반영한 양도이익에 과세
비거주자의 전문인적 용역소득 과세개선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기회 부여해 필요경비 공제 - 용역수행자의 항공료, 체재비, 각종 사용료, 인건비, 임차료 등
외국기업 국내 사업장의 과세개선	국내 고정사업자의 과세소득 범위에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까지 포함
거주자의 국외원천 자산소득 과세 개선	·국외보유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유가증권 등 국내 양도소득세처럼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허용 ·외국인거주자로서 체류기간이 5년미만이면 해외자산 양도소득의 비과세 특례조항 마련
거주자의 국외자산소득 세원관리체제 구축	·해외투자자금 송금 및 해외자산 변동내역 통보제 강화 ·금융결제원과 국세청간 전산망 구축, 국외자산 거래 자료 통보
파생상품관련 소득과세 정비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파생금융상품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부분과세 ·내국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과세, 거주자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전자상거래 관련과세정비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제정 참여를 통해 정비

자료 : 재정경제부, 1999

(2) 세제지원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 고도기술분야를 7개분야 265개 사업에서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71개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9개분야 50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21] 이 같은 고도 기술사업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최초 5년까지는 100%, 그 이후 3년까지는 50%를 감면받게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 100% 조

21) 이번에 추가된 고도기술산업은 인터넷·전자상거래, 연구개발업 등 산업지원서비스분야와 신물질·신공정, 생물산업, 환경·에너지 분야 등 지식산업분야로, 업종별로 보면 전자·정보·전기 92개(종전79개), 정밀기계·신공정 74개(36개), 재료·소재 73개(38개), 신물질·생물산업 46개(21개), 광학·의료기기 19개(14개), 수송기계 49개(39개), 환경·에너지 89개(32개), 건설·사회기반시설 55개(10개) 등이다.

세감면혜택을 받는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며 이후 30년간 50%를 감면받아 세제감면 혜택기간은 총 10년이 된다.

3. 관련 법령의 정비

(1)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된 법률에서는 외국인 투자가가 지분의 1/3까지는 이사회의 동의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였고(제8조의 2 ①), 기존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으로 개정함으로써(제8조의 2 ③), 적대적 M&A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

(2) 증권거래법 개정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내로 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 보유비율도 발행주식 총수의 0.05%에서 0.01%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외국인 토지법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거주 여부, 업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취득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은 계약 체결후 토지소재시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만 하면 된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들을 M&A할 경우 국내기업이 보유한 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하던 것을 M&A한 외국기업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4) 노사관련법 정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으로 노사정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은 정리해고제의 정비와 파견근로자의 파견문제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련법의 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그 외에도 노사정 위원회는 성과배분제 등 임금 체계 개선, 세제지원, 노사의 임금체계 합리화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

(5)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입주 업체에 건설비 지원, 세금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②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 철폐, ③조세감면폭 확대와 조세감면기간 연장, ④민원 일괄처리제와 자동 승인제 도입, 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기구로 개편, ⑥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이다.

<표 5>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구 분	내 용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 외국인 투자 신고 수리제를 단순 신고제로 변경 -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등록기관을 외국환 은행 본점에서 외국환 은행의 본·지점, KORTRA본사, 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까지 확대 - 외자도입 등 재경부장관에 보고 절차 폐지 - 비거주가의 외국인 투자 신고시 거주자 신고 대리인 제도 폐지 - 이외 다른 법령에의한 외국인 투자제한 내용을 매년 재경부장관이 통합고시
세제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지방세 감면 - 법인소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용 자본재 수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투자사업의 조세감면 대상여부의 사전 확정
국공유 재산임대 및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임대기간 : 20→50년 이내 및 이 기간내 임대기간 경신 - 임대료 : 현행 토지 등 가액의 1% 이상 보다 높게 - 임대료 감면대상 :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국가 재산 단지 및 외국인 투자 지역내 국가 소유 토지 등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 - 국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자금, 임대료 감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금요청시 최대한 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 확립	- 외국인 투자,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일괄처리제도 도입 - 인·허가 등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 시·도 투자진흥관에게 민원사무처리의 독려·점검 책임 부여 - 주요 민원사무의 인·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격상 - KORTRA내에 투자진흥센터 설치 - KORTRA사장에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직원파견 및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 - 투자진흥센터내 고충처리기구 설치
외국인 투자 지역 설치	- 조세감면구역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건설비용 및 기반 시설 지원 - 이 지역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수출입 제한을 완화 -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및 지정계열화 품목 생산의 위탁의무 적용배제
외국인 투자 위원회 설치	- 위원장은 재경부 7개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장을 위원으로 정함 - 외국인 투자의 기본정책, 조세감면 기준, 지자체지원사항,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 취득 제한 완화

자료 : 재정경제부, 1999

4. 외환거래 자유화

정부는 외자유치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여 2001년까지 외환거래를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여건이나 금융시스템 수용능력에 비춰 일시에 외환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표 6> 외환거래 자유화

구 분	조기시행(1998. 7. 1)	1단계(1999. 4. 1)	2단계(2001.1)
기본방향	IMF에 약속한 사항의 이행 및 외자유입 촉진	기업·금융기관의 사업활동 관련 거래 자유화	완전자유화
외국인 투자자	예금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국내투자 관련 거래 자유화	만기 1년 이상 국내예금 자유화	국내예금 자유화
국내기업	무역신용 이용자유화 중장기 현금차관도입 자유화	· 1년 이하 외화차입과 해외증권발행 자유화 · 수출입결제방법 제한 철폐 · 국내기업간 외환거래 가능 · 해외부동산·금융업·보험업 투자 허용 · 역외외환거래 허용 · 외환실수요원칙 폐지 · 파생금융거래(국내외국환은행통한)자유화	· 해외 예금 및 해외 신용공여 자유화 · 대외 채권 회수 의무 자유화 · 모든 단기차입 가능 · 은행을 통하지 않은 파생 금융거래 자유화 · 외국환업무 자유화
금융기관	외국환은행 자기자본 15%내에서 외환매입·매각 자유화(포지션과리 개편) *원화~외화간 재정거래 촉진	완전자유화(실수요원칙 폐지 등) *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허용(인가제→등록제)	해외금융기관과의 직접 파생금융상품 거래 가능
개 인		국내외환거래 자유화	증여송금, 여행경비, 이주비, 해외예금 등 자유화

자료 : 재정경제부, 1999

5. 행정절차의 정비

1997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절차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신청서류가 140-150개에 달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하에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되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4-5개의 서류만 먼저 제출받아 사전승인해 주고 구비서류중 나머지는 사후 보완하는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설치, 투자상담지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1억달러 이상 유치하면 정부가 해당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개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 10월까지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며, 19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Ⅳ.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첫째, 정책결정시스템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개방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의 투명성과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명문화된 정책과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수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환경을 전반적으로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안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점유치업종이나 중점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추세와 같이 국내외 기업간에 투자인센티브의 차별을 두지 않는 중립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연구원, 199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WTO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을 띠게 되어 상대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입증될 경우 보복조치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투자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의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일단 유치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허가 취득, 수송·통신 시설 사용문제, 금융기관 접근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문제들에 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정서비스이며, 이런 행정서비스의 유무가 투자유치를 좌우하게 된다.

2.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외국인 투자를 다루는 여러 법률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점포당 매장면적 및 점포수, 영업범위, 투자지분 제한 등에 의해 규제가 존속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지분이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들 제한 규정을 완화 내지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중복규제, 이중규제, 명문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규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료와 기업인, 외국인 투자가로 구성된 옴부즈맨(민원조사) 제도를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3.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간섭을 폐지하여 민간베이스에서의 교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제도를 대신하여 로열티의 송금시에 외국환 통계 목적의 보고제도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이홍구, 1994). 지적 재산권 침해사실을 인지할 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지적 재산권 침해시 강력한 행정집행력이 요구된다.

4.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기능배분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 과제

투자유치와 관련해 제도는 재정경제부, 행정은 산업자원부, 국외활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지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행정처리 절차를 대행해주는 데 불과하다.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 투자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해당기관에 위임되어 있어 다른 부처나 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선정문제를 놓고 관련 부처간에 이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법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간 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아예 다른 개별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외환거래 자유화의 방향은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정부가 운영해 오던 상업차관의 도입이 자유로워져 특혜시비가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외화도피도 문제지만 이른바 핫머니로 불리는 단기성 투기자금의 존재로 통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단기차입 증대와 파생금융거래 증대를 촉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외환수급 불균형 등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평상시에는 환율과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금융정책을 운용하면서 핫머니들이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되,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이 포착될 때는 사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표 7> 외환거래 자유화의 예상효과

구 분	예 상 효 과	
금융기관	긍정적 효과	· 국내외환·금융시장에서 경쟁촉진으로 금융시스템 효율성 제고 · 금융기관 경영혁신과 서비스 제고
	부정적 효과	· 국내금융시장 잠식가능성 · 금융기관의 환위험, 신용위험 증가
기 업	긍정적 효과	· 외환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다양한 기법의 환위험관리 가능 · 외화자금 조달, 운용, 매매 탄력성 확대
	부정적 효과	· 과다한 기업차입수요 유발가능성 · 외화편법유출과 통계보고 누락가능성 · 기업의 환위험, 신용위험 급증
개 인	긍정적 효과	· 송금, 환전절차 간소화와 외환 수수료 절감 · 자산운용 다양화, 고품질 금융서비스 이용
	부정적 효과	· 국외자산 도피, 자금 세탁 목적 거래와 위폐 불법 유통 증가 가능성 ·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자금유출입 가능성

6.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 또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내지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대우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은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외자의 도입을 막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인식하게 될 때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정부와 언론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였던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자본도입의 형태로서 외국인직접투자보다도 차관을 선호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미발달, 기업지배구조의 부실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국내 개혁과제가 지연되어온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가 개방경제로 들어선 이상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이득을 누려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실행의 측면이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고는 있으나 별반 실천은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단순한 법규 개선이나 규제완화가 아닌 실천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제도개혁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사정은 누구의 탓을 하고 누구를 먼저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존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스스로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차만 있을 뿐 모든 부문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행과 사고 방식을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향상시키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승진 · 김호연 · 조성욱,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2.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6. 12.
3. 오정훈, 「외국인 투자 추가 개방 어느 정도 가능한가」, 주간경제 465호. 1998.
4. 온기운 · 조현태 · 이경숙 · 최봉현,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6.
5. 최준영, "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나라경제, 1998. 5.
6. Agawal J. P.,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Survey, Weltwirtschaftlidhes Archiev, 1980.
7. Bachtler J., "Policy comepeti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Development Center Workshop, 1996.
8. Ensign P. C., "A System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dvantage of being multinational" ,Advances in competitiveness reserch, l(1), 1993
9. Graham E. 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5. 6.
10. Green M. B. & Mcnaughton R. B.,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vebury, 1995
11. Rugman A., "International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Reappraisal of Literature", Weltwirtschaftlidhes Archie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16, 1980.
12. Vernon Raymond., Soverighty at Bay : Multinational Spread of U. S. Enterprises, Basis Books, Cnc., 1971.